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이 보장하여 드립니다.

## 하나 차곡차곡 채권형 추가금전신탁 제( )호 약관 (구 하나은행)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수탁자인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신탁거래자인 위탁자 및 수익 자(이하 "거래처"라함)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이익증식 등을 위하여 계약한 금전 신탁거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은행과 거래처의 권리와 의무, 기타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신탁관계인)** ① 이 약관에서 위탁자란 은행에 금전을 신탁한 자이며, 수탁자란 금전을 인수한 자, 즉 은행을 말합니다.

② 수익자란 원금 및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 제 2 항의 수익자는 원금수익자와 이익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금수익자인 동시에 이익수익자입니다.

④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동의와 은행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위탁자 본인에 한하며 상속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증표나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4 조(거래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증서에 의한 거래)** 거래처는 은행에서 교부한 증서(통장, 전자통장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통장입금 신청서에 의한 경우나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의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증서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신탁거래에 사용할 거래처의 인감 또는

서명등을 미리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가계수표(이하"수표"라 함)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하"기타증권"이라 함)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발행하고 동 기타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를 확인한 후 입금하며 증서는 수령증을 회수하고 발행하여 드립니다.

③ 제 1 항의 수표 및 제 2 항의 기타증권에 대하여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④ 이 신탁의 입금시 기준가격은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제 8 조(신탁성립시기)** ①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에 신탁이 성립합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신탁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
3. 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수표를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 1 항 제 3 호에 불구하고 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하는 경우 대지급 요건·보증조건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을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는 신탁 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신탁이 성립합니다.

**제 9 조(수표의 부도)** ①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신탁원장에서 뺀 후,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수표를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 (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하는 대로 돌려주기로 합니다.

**제 10 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신탁방법)** 이 신탁의 신탁방법은 개별 신탁건별로 자유롭게 신탁하고 해지하는 개별식 방법에 의합니다

**제 12 조(신탁금액)** 이 신탁의 신탁금액은 최초 입금시에는 일백만원(₩1,000,000) 이상으로 하며, 추가 입금시에는 일만원(₩10,000)이상으로 합니다

**제 13 조(신탁기간 등)**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매 신탁건별로 1 년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탁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신탁금을 반환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적배당합니다.

**제 14 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보호 및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 15 조(이익계산)** ① 이 신탁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이익계산일에 기준가격방식에 의하여 실적배당합니다.

1. 원가식 : 매 수탁건별로 수탁일로부터 매 1 년이 경과하는 응당일(응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로 하며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응당일에 이은 첫영업일) 및 해지일

2. 만기지급식 : 매수탁건별로 해지일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원가식의 경우 이익계산기간중 발생한 이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 익계산일을 차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이하 "신탁재산"이라 함)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신탁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② 이 신탁의 수익권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수탁금액} \div \text{수탁일의 기준가격}) \times 1,000$$

③ 제 1 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신탁재산의 평가는 제 17 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이 신탁의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⑤ 은행은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영업점에 비치하고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7 조(신탁재산의 평가)** ①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주식

가.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평가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가. 다만, 둘 이상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증권거래소의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며,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당해 주식 최종시가

나.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다만,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4 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며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

다.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2. 채권

가. 상장채권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 월간 매월 10 일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 포함)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일의 최종시가

나. 가목에 해당되는 상장채권중 평가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과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장채권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다. 비상장채권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 6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2 개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 "가" 및 "다"의 기준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채권일 경우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을 발행한 위탁회사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

4.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

가. 기업어음(CP)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

나. 정기에금증서(CD), 표지어음

발행주체에 따라 동일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

다. "가"내지 "나"의 기준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5. 파생상품

가. 선물거래는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정산가격. 단 평가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자의 선물정산가격.

나. 옵션은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기준가격. 단, 평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자의 기준가격

다. 해외선물거래의 평가에 대하여는 가호 및 나호를 준용

#### 6.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1 호의 방법을 준용하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7. 제 1 호 내지 제 6 호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기간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④ 이 신탁에 편입된 운용자산중 부실자산(발행자의 최종부도가 공시된 자산, 화의 및 법정관리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자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한 자산, 신용등급이 D 등급인 채권등)에 대하여는 부실인식시점에서 미수수익을 "0"원으로 계상합니다.

**제 18 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이 신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

1.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미만으로 합니다.

2. 대출,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0%이내로 합니다. 다만, 대출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 이내로 하며, 제 10 항제 1 호 내지 제 8 호에 정한 유동성자산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이상으로 합니다.

3.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미결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

가. 선물거래 : 신탁재산의 20%이내

나. 옵션거래 : 신탁재산의 5%이내

4. 관련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목적의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운용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로부터 1 개월, 펀드해 지 이전 2 개월, 신탁의 대규모 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운용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③ 제 1 항 제 1 호의 "주식(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발행주식,공모주식 포함)에의 운용"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④ 제 3 항의 "공모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내지 제 6 호에 계기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중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주청약 또는 실권주 및 잔여주식 인수
2. 공모주

⑤ 제 1 항제 2 호의 "대출에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로 합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대출
2. 은행법 제 22 조제 6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
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
4.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

5.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

다. 건설사업기본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출

⑥ 은행은 제 5 항의 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주의 종합적인 신용분석을 통하여 신용등급 책정 및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며, 대출금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범위내에서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 1 항제 2 호의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포함)에의 운용"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응모·인수·매입을 말합니다.

1. 국채·공채

2. 은행법 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내지 제 7 호, 제 9 호 내지 제 13 호 및 제 15 호의 기관이 발행하거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
  3.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3 항 및 제 15 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4.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5.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7.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 법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 금융기구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8.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규정하는 외화증권
- ⑧ 제 7 항제 2 호 내지 제 5 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모사채는 다음 각호의 1 에 한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채권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무보증사채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자중 2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는 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료부터 당해 사채권의 발행일로부터 과거 3 개월이내에 무보증채권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2.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자중 2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료부터 당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과거 1 년이내에 채권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평가를 받은사실이 있는 기관이 보증한 채권
- ⑨ 제 7 항 내지 8 항의 "사모사채" 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로서 다음 각호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채에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5 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2.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

⑩ 제 1 항제 2 호의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당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3. 제 7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4. 증권거래법 제 19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로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의 매매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를 관리하는 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인수
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7.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9.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관한법률 제 2 조 제 1 호, 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한 법인이 발행하는 어음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12. 제 1 호 내지 제 11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또는 금감위에서 승인을 얻은 방법

⑪ 제 1 항제 3 호의 "파생상품에의 운용"이란 다음 각호로 합니다. 다만, 제 3 호의 선물거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1. 증권거래법 제 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
3. 선물거래법 제 3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의한 선물거래

**제 19 조(신탁재산 운용의 재위탁)** 은행은 제 18 조의 운용업무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제 3 자에게 신탁재산 운용을 위탁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제 20 조(신탁재산운용의 제한)** 이 신탁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합니다. 다만,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동일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다만, 동일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6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이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투자가능(이 경우시가총액비중은 매년 6 월말일과 12 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6 월간 적용)

2. 동일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운용은 그 발행 주식총수의 10% 이내
3. 동일한 법인(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18 조제 5 항, 제 7 항 및 제 10 항제 3 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 18 조제 5 항제 5 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4. 동일한 계열기업군(은행업감독규정 제 79 조에 정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18 조제 5 항, 제 7 항 및 제 10 항제 3 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 18 조제 5 항제 5 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25% 이내
5.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18 조제 5 항, 제 7 항 및 제 10 항제 3 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 18 조제 5 항제 5 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6.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7.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운용할 수 없다.

**제 21 조(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3%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탁보수는 신탁보수 계산기간중 매일 미지급신탁보수로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은행의 회계결산일
2. 펀드해지일

**제 22 조(조세 및 비용)**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중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부감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 23 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4 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25 조(신탁금의 지급)** ① 이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의 취소는 해지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신탁원리금은 해지신청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제 5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며 이때의 기준가격은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③ 이 신탁의 신탁금을 일부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방법에 의해 지급하며 일부지급후 신탁잔액이 일백만원(₩1,0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전액을 해지신청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입금건별로 이익계산기간중 신탁이익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여 이 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1. 3 개월미만 : 신탁이익의 70%

2. 3 개월 이상 6 개월미만 : 신탁이익의 50%

3. 6 개월이상 1 년 미만 : 신탁이익의 30%

⑤ 이 신탁의 원리금은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원리금을 자동이체하고,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예금 또는 신탁에 입금에 두었다가 거래처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법적인 지급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6 조(신탁금 지급의 연기)** 제 25 조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 개월간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펀드의 해지)**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금오십억원(₩5,00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 1 항에 따라 펀드를 해지할 때에는 이를 영업점에 1 개월동안 게시하고 위탁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2 개이상의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로 합니다. 통지나 공고후 1 개월이내에 거래처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8 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 29 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중에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대리인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 30 조(증서의 재발급)** 제 29 조에 따라 통장·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 31 조(오류처리 등)** ①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원장이나 증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때는 이를 정정 처리합니다.

**제 32 조(비밀보장)** 은행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2020.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약관-127 호(2020.6.17)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 33 조(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정보의 제공요청자를 본인으로 간주하여 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통지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35 조(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6 조(약관의 변경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 개월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이내에 거래처가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법령이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7 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밖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9 조의 신고 및 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8 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신탁업감독규정 및 은행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2020.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약관-127 호(2020.6.17)

**제 39 조(관할법원)** 은행,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공시)**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 신탁보수율 등을 통장 및 상품 안내장 등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 신탁의 운용내역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공합니다.

## 부 칙

**제 1 조(신탁금의 지급 및 중도해지의 예외)** ① 신탁금의 지급 또는 중도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닌 은행휴무일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또는 신탁이익을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상품의 만기(원본교부일)
2.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개시일

② 제 1 항의 규정은 2002.6.30.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임금 건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는 신탁상품의 경우는 2002.6.30.이전 임금분에 한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 7. 1.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부칙(2)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7. 27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